

보 도 자 료

보도 2018. 5. 23.(수) 10:00부터

배포

2018. 5. 21.(월)

책임자

금융정책실 김해식 실장(3775-9041) 작성자

황현아 연구위원(3775-9047)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6매

보험연구원,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 위반행위 경중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미련해야.."

-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5월 23일(수) 오전 10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함
 - [행사 취지]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 무의 내용 및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 및 관련 과징금 규정이 하나로 포괄되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 유형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규제하며, 이에 대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행위의 경중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되는 금지행위를 유형화·구체화하고, 각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보험규제의 효과성 및 합리성에 대한 점검 필요] 한기정 보험
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험규제, 특히 제재는 위반행
위의 경중에 부합하여야 비로소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
다"고 하였으며, "현재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제재 규정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함으로써 보험규제의 효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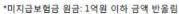
□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보험 계약의 내용,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는 곧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임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었으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사후적 규제수단은 더욱 강화됨
□ 기초서류에는 보험사업 운영 및 보험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사항 위반은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삭감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터 단순한 업무 착오나 계산상 실수에 이트기까지 매우 다양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행위들이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이리는 하나의 행위로 포괄되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어왔음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에서
아 모임되자의 기소시뉴 원인 의무 위한에 대한 과정금 무과기군(급용위 고치) 에서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시 중대성, 고의성,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험업법상 기준금액 및 부과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탄력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

<u>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u> 과징금 부과금액이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 [동일유형, 동일사유의 과징금 부과규모 비교]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위반금액(미지급 보험 금 원금)과 과징금 부과금액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
 - 이는 위반금액이 아닌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로써, 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더 큰 보험사가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 예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들 중 (1) A사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원금이 34억 2,800만 원 (아래 그림 No.2)임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은 6백만 원으로 산정된 반면, B사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원금이 21억 8,700만 원(아래 그림 No.6)임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1,300만 원으로 산정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미지급 보험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No	제재일자	미지급 보험금(원금)*	과징금 부과금액
1	2016. 11. 23.	10억 9,500만 원	300만 원
2	2016. 11. 23.	34억 2,800만 원	600만 원
3	2016. 11. 23.	17억 7,800만 원	500만 원
4	2016. 11. 23.	4억 9,500만 원	100만 원
5	2016. 11. 23.	12억 1,500만 원	600만 원
6	2017. 10. 19.	21억 8,700만 원	1,300만 원
7	2017. 10. 19.	17억 2,900만 원	200만 원
8	2017. 10. 19.	38억 8,700만 원	1,900만 원
9	2017. 10. 19.	32억 7,200만 원	2,000만 원





- □ [동일유형, 상이사유 과징금 부과규모 비교] 보험금 미지급이라는 동일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미지급 보험금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인 경우에는 미지급 보험금 대비 과징금 금액이 낮게 산정된 반면, 기타의 경우에는 미지급 보험금 대비 과징금 금액이 높게 산정됨
 -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비율*이 0.11~0.61%인 반면, 기타사유(질병, 상해,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금 미지급)로 보험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동 비율이 10~1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 과징금부과금액÷미지급보험금(워금)×100

<보험금 미지급: 미지급 보험금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 비율>

비율(%)*	과징금 부과금액	미지급 보험금(원금)	구분	일자	No
10.91	600만 원	5,500만 원	기타	2012. 12. 24.	1
0.11	4,900만 원	432억2,900만 원*	재해	2014. 8. 27.	2
141.18	2,400만 원	1,700만 원	기타	2015. 1. 22.	3
10.00	500만 원	5,000만 원	기타	2015. 9. 21.	4
0.27	300만 원	10억 9,500만 원	재해	2016. 11. 23.	5
0.18	600만 원	34억 2,800만 원	재해	2016. 11. 23.	6
0.28	500만 원	17억 7,800만 원	재해	2016. 11. 23.	7
0.20	100만 원	4억 9,500만 원	재해	2016. 11. 23.	8
0.49	600만 원	12억 1,500만 원	재해	2016. 11. 23.	9
38.89	700만 원	1,800만 원	기타	2017. 10. 12.	10
0.59	1,300만 원	21억 8,700만 원	재해	2017. 10. 19.	11
0.12	200만 원	17억 2,900만 원	재해	2017. 10. 19.	12
0.49	1,900만 원	38억 8,700만 원	재해	2017. 10. 19.	13
0.61	2,000만 원	32억 7,200만 원	재해	2017. 10. 19.	14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비율: 0.11%~0.61%

기타사유 보험금 미지급

• 비율: 10%~141%

*비율=과징금부과금액/미지급보험금(원금)*100

- □ [상이유형간 과징금 부과규모 비교] 보험금 미지급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경우(A유형)와 보험료 부당산출, 공시이율 부당산출 등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B유형) 사이에 과징금 규모에 불균형이 있음*
 -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위반행위(A유형)의 경우 상품규제로서의 성격보다 개별 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의 성격이 더 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보험계약 건수 자체가 적어 과징금 규모도 매우 낮게 산정됨
 - 반면,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위반행위(B유형)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인 '해당 보험계약' 자체의 범위가 넓어져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해 높은 과징금이 산출되는 현상이 나타남
 - *예시: A유형 중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감독당국이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였고, 위반기간도 장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규모가 낮게 산정된반면, B유형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사례의 경우, 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었고, 위반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과징금이 높게 산정됨

<A유형 사례와 B유형 사례의 과징금 산출 규모 비교>

[A유형 사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약관 기재사항 위반 :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 의무위반금액(총 미지급금액): 1,025억 원 (2011. 1. 24. 이후): 158억 원(원금 120억 원)
- 연간 수입보험료: [기재 없음]
- 과징금: 3억9,500만 원*
- * 금융당국은 위 사례를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평 가하였고(부과비율 150%),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설명의무 위반까지 과징금 부과사유로 추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음

[B유형 사례] 공시이율 결정 부적정

- 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위반: 공시이율 부적정 산출 (기초데이터 산출상 오류로 인해 공시이율이 적정수준 보다 높게 산정됨)
- 의무위반금액: [기재 없음]
- 연간 수입보험료: 1조5,644억 원 (2011. 1. 24. 이후): 9,477억 원
- <u>과징금: 8억2천만 원</u>

{현행 규정 적용 시: 200억 원(p11 사례 참고)}

위반행위 성격 및 경중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재수단 도입 필요
앞서 본 문제점들은 성격이 다른 위반행위들을 기초서류 준수의무라는 하나의 의무 위반행위로 취급하여 연간 수입보험료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i)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부과 대상"의 분리, (ii) 제재대상 행위의 유형화 및 구체화, (iii) 과징금 부과기준 차별화 조치 가 필요함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과징금 부과 대상의 분리]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명제 자체는 당연하고, 기초서류에 대한 내용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상품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는 필요한 것이나, 기초서류 위반을 곧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초서류 위반행위를 곧법령 위반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기초서류 준수의무 규정(보험업법 제127조의3)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제 재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는 별도로 규정하여야 함
[제재대상행위의 유형화 및 구체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중 ① 보험금 등 지급관련 부당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성격과 상품규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 유형은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보험금 지급관련 부당행위 이외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 위반" 또는 "사기적, 불공정 영업관행"의 경우 현행 인상된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③ 나머지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정하거나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과징금 부과기준 차별화 등] ① 보험금 등 지급관련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비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② 그 밖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상품관리 및 영업관행 관련 규제 위반인 경우에는 연

간 수입보험료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②-1), 개별계약의 이행관련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비금전적 제재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②